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 람	기관의 장

제1829호
2023년 9월 21일
목요일

공 고

- 공 고 제 1666 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고 세 무 1 과 2
- 공 고 제 1693 호 무단방치차량(거주불명자)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4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홍보실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3-1666호

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고

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(구세)를 감면하도록 하는 사안에 대하여 남동구의회 의결을 얻은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9. 21.

남 동 구 청 장

1. 감면대상자

- 1)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(이하 “사망자”라 함)
- 2)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 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, 이하 “유가족”이라 함)

2. 세목별 감면내용

가. 주민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(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을 면제한다.

나. 재산세(「지방세법」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, 이하 같다)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.

3. 기타

가.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
나.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3-1693호

무단방치(거주불명자)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및 강제견인 예고 공시송달 공고

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,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강제견인 예고 및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나, 소유자의 거주불명자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. 9. 20.

남 동 구 청 장

1. 공 고 기 간: 2023.9.20. ~ 2023.10.5.(15일)
2. 대 상 차 량: 47로6706
3. 견 인 일 시: 2023.10.5. 이후
4. 공 고 내 용

가. 자동차 소유자(점유자)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이동을 하시기 바라며,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법,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견인 후 강제처리(폐차,매각) 될 수 있습니다.

나. 강제견인 예고문을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(행정절차법 제14조4항)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(☎032-453-282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무단방치차량 내역서

연번	접수번호	차량등록번호	차명	방치장소 (인천광역시남동구)	수취인명	주 소	견인예정일자
1	2023-00209	47로6706	마티즈 1.0 DOHC	만수동 946-32	한*주 (거주불명자)	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**번길 **, ***호(**동)	2023.10.5. 이후